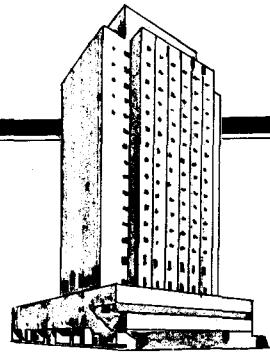


소식

# 기관단체



## ■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지난 6월 21일 농림수산부 대회 의실에서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단체·업계 대표가 참석하여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의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화장의 입란상황과 병아리 판매동향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홍보함으로써 수급예측과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입란 및 병아리 생산판매 동향조사계획과 계산물의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닭계열화 생산사업 정착방안 및 소비신장을 위한 닭고기의 위생처리공급에 대한 도계장 및 닭고기 유통구조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 ■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농림수산부는 최근 계란 및 육계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산란계농가에 대하여는 신규병아리의 입식자제와 노계의 조기도태를 바라고 있으며, 육계농가에게도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 권유함과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란가격분석은 △87년도 하반기 이후 하락된 가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은 하락하는 데도 생산조절은 안되고, △생산시설의 낙후 및 유통체계 미화립 등의 개선이 당면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육계가격 분석은 △사육기간이 짧고 과잉·과소 생산이 자주 발생되었으며, △산지가격의 등락폭이 크게 발생하고, △생산시설의 낙후 및 유통체계 미화립 등을 개선의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의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 〈추진대책〉

- 수급비축사업 제도화
- 생산조절을 위한 사육동향과 전망분석 홍보
- 생산자단체 육성으로 자율생산 조절기능 강화
- 닭 계열화 생산사업 정착유도
- 계사시설 개선 및 경영기술지도로 생산성 향상
- 계란집하장 설치로 유통구조 개선

## ■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기준 고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094호, 대통령령 제12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02호)이 제정 공포되어 1988년 6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설치기준(규칙 제30조)은 처리대상 가축의 수를 고려하여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보(제10969호, 88. 6. 30. 목)에 환경청고시 제88-21호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번에 고시하였다.

양계장 정화시설은 본회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전업규모인 1만수이상 규모(300여평규모, 특별지역은 150평)에서 100m<sup>2</sup>당 2m<sup>3</sup>이상 설치토록 되었다. 물론 1만수 이하 농장도 빗물유입 등에 의한 계분범람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설치구조는 △빗물침투방지를 위하여 지붕설치를 의무화 했고 바닥과 측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시설(부력 등)을 해야한다. △바닥은 경사지게 하여 침출액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시설이 필요하다. △침출액이 흘러내리는 배출구에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위한 가스배출구를 시설해야 한다.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축산폐수시설 표준 설계 도면은 각 시군에 비치할 예정인 바 그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고시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업을 하는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전의서 제출, 실무부서 방문협의 등을 통해 양계장의 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계분창고 정도의 시

설로 대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양계장에서는 악취, 오수 등에 의한 주변의 오염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청 생활폐기물과(418-6256)로 문의하면 된다.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 1. 저장액비화방법

구 분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투입조	1) 유입구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출구에는 스컴을 제거하기 위한 배플(Baffle)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0.24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소·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0.12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돼지·소·말 사육시설
저류조	1)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적절로 접속하여야 하며 제1저류조는 총용량의 1/2~2/3로 하고 각 저류조에는 배플(Baffle)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밀폐식으로 하되 투입조 내부 청소 및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팬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배출을 위한 별도의 가스배출구(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14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소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7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4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유효수심은 $2.0m$ 이상으로 하고 배플(Baffle)의 깊이는 유효수심의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저장조	1) 돼지·소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저류조용량의 1/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저류조용량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매립처분방법

구 分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건조시설	1) 돼지·소·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1.5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닭·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2.0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바닥과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바닥은 경사를 만들어 침출액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며, 침출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침출액이 흘러내리는 배출구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악취 제거를 위한 가스 배출구(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소·말·닭·오리 사육시설
매립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5호의 매립시설기준에 준한다.	

#### 3. 퇴비화방법

구 分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건조시설	매립처분방법의 건조시설에 준한다.	돼지·소·말·닭·오리 사육시설
발효조	1) 유효용량은 돼지·소·말 사육시설의 면적 $100m^2$ 당 $10m^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바닥과 측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경사를 만들어 침출액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출액이 흘러내리는 배출구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별도의 예비 발효시설을 설치하거나 2실 이상으로 구획하여 연속사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6) 악취 제거를 위한 가스 배출구(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소·말 사육시설

#### 4. 토양침투방법

구 분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침전조	<p>1)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0.8m^3</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2) 소·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0.4m^3</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3) 유효 수심을 <math>1.5m</math> 이상으로 하고, 바닥부분은 오니를 한곳으로 집적시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돼지·소·말 사육시설	<p>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2) 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말 사육시설 저류조 용량의 <math>2/5</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침투여상	<p>1) 3조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고, 구획된 각각의 시설은 깊이 <math>80\sim100cm</math>, 폭 <math>50\sim90cm</math>로 하며, 맨 밑바닥에는 자갈총, 그 위에 모래총을 두고 표면에는 덮개흙으로 덮는다.</p> <p>2) 자갈총은 직경 <math>1\sim5cm</math>의 자갈을 사용하고, 자갈총의 두께는 <math>40\sim50cm</math>로 하여야 한다.</p> <p>3) 모래총은 직경 <math>0.3\sim1.2mm</math>의 모래를 사용하되 모래총의 두께는 <math>20\sim30cm</math>로 하고 덮개흙의 두께는 <math>10\sim20cm</math>로 하여야 한다.</p> <p>4) 자갈총 부위에 폐수 유입관(P.V.C, 토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5) 침투여상과 침투여상의 간격은 <math>2m</math> 이상으로 하며 각 여상의 길이는 <math>50m</math>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6)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소요면적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70m^2</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7) 소·말 사육시설의 경우 소요면적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35m^2</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4.2m^3</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2) 소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2.1m^3</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3) 말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1.2m^3</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4) 여재부분의 용적은 전체용적의 <math>67\%</mat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5) 여재의 깊이는 <math>1.0m</math> 이상 <math>1.5m</math> 이하로 한다.</p> <p>6) 여재는 입경이 <math>5cm</math> 이상 <math>7.5cm</math> 이하의 경질 쇠석,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호기성 생물막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7) 쇠석을 받치는 하면과 조의 저면파의 간격을 <math>20cm</math> 이상으로 하여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8) 배기관 및 송기공을 설치하는 등 통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9) 여재면에 대하여 균등하게 살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 5. 살수여상방법

구 분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투입조	저장액비화 방법의 투입조에 준한다.	돼지·소·말
저류조	유효용량은 저장액비화 방법의 저류조 용량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저장조	1) 돼지·소 사육시설의 경우 유효용량은 돼지·소 사육시설 저류조 용량의	

#### 6. 산화구방법

구 분	구조 및 규격	적용대상
투입조	저장액비화 방법의 투입조에 준한다.	돼지·소·말
산화구	<p>1) 유효수심은 <math>1\sim2m</math>로 하고 산화구의 양측은 지상으로부터 <math>30cm</math> 이상 높여야 한다.</p> <p>2) 폭기용 로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요면적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로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p> <p>3) 로타를 설치하는 경우 유효용량은 돼지 사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4.2m^3</math> 이상, 소 사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math>100m^2</math>당 <math>2.1m^3</math> 이상, 말 사</p>	사육시설

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 <sup>2</sup> 당 1. 2m <sup>3</sup>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로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효 용량은 돼지 사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 <sup>2</sup> 당 25m <sup>3</sup> 이상, 소 사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 <sup>2</sup> 당 12.5m <sup>3</sup> 이상, 말 사육시설은 사육시설의 면적 100m <sup>2</sup> 당 7.0m <sup>3</sup>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로타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kg 당 1kg 이상의 산소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한국축산경영학회 국제 심포지움 개최 —6월11일, 서울우유협동조합 강당에서 —



△ 축산물 수입개방과 한국축산의 대응 방안 세미나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류제창)가 지난 6월11일(토) 서울우유협동조합 4층 강당에서 「축산물 수입개방과 한국축산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쇠고기 수입방침이 국내 쇠고기 수급상황이나 대미통상관계를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가 아닌 수입쿼터제로 금년도 1만4천5백톤의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방침을 6월 7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한 바, 이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고 축산의 적정소득보장과 국내축산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큰소 및 송아지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것.

둘째, 정부와 13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축산물 가격안정법을 제정하여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등의 적정 가격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세째, 국내축산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배합사료 원료와 축산 기자재의 도입시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세와 유통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네째, 현행 축산물 연동가격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부위별, 등급별 차등가격제에 의한 가격자유화를 실시할 것.

다섯째, 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와 같은 유리한 축산물부터 적극적인 대일 수출을 유도 장려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촉진”을 조속히 제정할 것.

여섯째, 대미통상무역상 부득이한 쇠고기의 수입이라면 정부이든 무역이윤으로 수지맞는 대기업이든 수입된 쇠고기를 즉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할 것.

일곱째, 만약에 부득이 수입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적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축협중앙회나 양축가(축협), 학계,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반드시 수입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국제경영시대에 직면한 축산경영자들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적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아홉째, 소비자들은 애국적인 양축가의 생존권 보호에 관심을 갖고, 수입쇠고기 보다는 국민 건강에 알맞는 국산 쇠고기 소비에 앞장설 것.

열째, 차제에 정부는 축산물 수급 균형과 축산소득의 증대를 통한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생산, 유통소비, 구조분배, 재정금융, 관세정책,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될 것이다.

### ■ “곰두리 뱃지달기 운동” 전개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협조요청—

서울올림픽대회 직후에 개최되는 국내 100만 장애자와 500만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제전이 될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서울에서 세계 60여개국의 선수 및 임원 등 약 4,000여명이 참가할 국제장애인 스포츠 대제전이 개최된

다.

이에 따라 동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장애자들의 사기와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장애자 복지증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이번 대회를 널리 알립은 물론 부족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사랑으로 세계를-이란 “곰두리 뱃지 달기운동”을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차별보다는 평등, 편견보다는 사랑으로 장애자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끼고 협력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벌이는 곰두리 뱃지 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 축협 '88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수입반대 결의대회도 가져—



△ 축협 임시총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각 지역 조합장 158명을 포함,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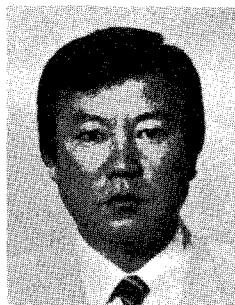
임시총회는 다음 행사인 「쇠고기 수입반대 결의대회」 개최로 인하여 간단히 경과보고 차원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마무리 짓고,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온적인 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한 수입반대 결의대회 개최를 속행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그간 정부가 양축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수입을 구체화한 차사와 뚜렷한 대책 없이 쇠고기수입을 재개하려는 정부측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농민의 희생을 재차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대회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긴급토론후 결의문 채택에서 ▲확고한 소값 안정체제 실시로 적정한 소값을 유지할 것 ▲한우개량과 증식사

업을 적극 지원하여 소사육기반 공고히 할 것 ▲축산자금 지원 확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제할 것 ▲초지법 개선 및 부존자원 이용을 확대할 것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시킬 것 ▲쇠고기 수입창구를 생산자단체로 일원화 할 것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의 정부 발상을 전환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당초 농림수산부장관 및 4당정책의장을 참석시켜 각각의 입장을 듣기로 했으나 불참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1백만 양축가들의 강력한 쇠고기 수입반대 의사를 전달키 위해 조합별로 인원을 동원해 실력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업무추진을 대의원회에 일임하였다.

## ■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에 정성준씨 영입



정성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지재선)는 지난 6월 10일 제9차 이사회에서 김남용 전 전무이사의 후임에 정성준(전 코린화학 전무)씨를 영입, 전무이사로 발령했다.

신임 정성준 전무는 충남 서산출신으로 64년 서울농대 축산학과를 졸업, 농진청, 축산시험장, 농림수산부 축산국기좌로 근무하면서 체계적인 행정업무를 쌓고, 배합사료 생산업체인 서해농산, 동물약품업체인 코린화학에서 야외실무 업무를 익히는 등 줄곧 축산업계에 외곬으로 몸담아 왔다.

다부진 체격에 미남형인 얼굴로 끊고 맷음이 정확한 정전무이사는 업무처리도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맡김으로써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옳은 일에는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맡은 일은 꼭 이룩해 놓고 만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쇠고기 수입개방 등 현안문제가 쌓여있는 낙농, 육우 업계발전에 정전무역할에 큰 기대가 된다.

##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세미나 개최 —6월 18일, 양돈회관 강당에서—

제21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정영채) 춘계학술세미나가 지난 6월 18일(토) 오후2시 양돈회관 강당에서 대한양돈협회와 제일제당(주)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주제로 국립동물검역소 김범래 소장의 「식육의 수출입 현황과 검역조건」, 서울대 이영순 박사의 「식육위생검사기술 개선방안」, 가축위생연구소 김재진 연구관의 「식육의 안전성 문제현황과 해결방안」의 강연에 이어 일본 보건후생성 유육위생과 難波江과장의 「수출입 식육위생 및 안전성 검사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식육중에 항생제나 항균제 등이 절대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도 위생문제에 지나칠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산이거나 수입이거나를 불문하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수출 육류의 위생문제에 대한 토론과 내수용 육류도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질병퇴치, 위생검사 철저, 약품의 용법·용량 준수, 휴약기간 등을 철저히 지켜서 위생적이고 질좋은 육류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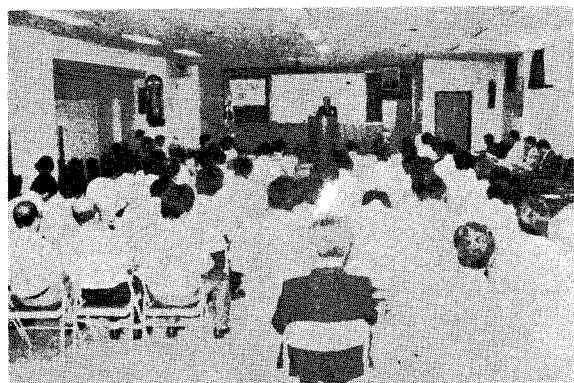
## ■ 6월 가축질병예찰 협의회 개최

제60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박근식)가 지난 6월 30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농림수산부 관계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동향과 백신소비현황, 가축질병예찰 통보상황 검토가 있은 후 돼지 오제스키병 국내 발생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협의사항으로는 여름철 질병예방관리 홍보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최근 뉴캣슬병 발생 정보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매스컴에 적극홍보하여 주의를唤기시키기로 했다.

## ■ 제5차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개최



△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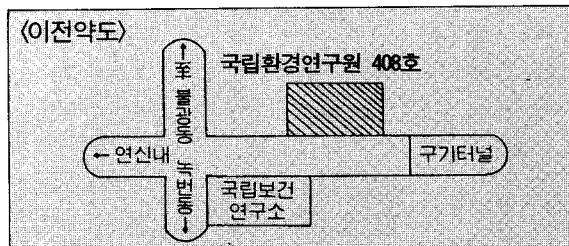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6월 24일(금) 제5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8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89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에 이어 덕일농장 민덕기 사장의 계란생산비 절감방안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

## ■ 한국폐기물학회 사무실 이전

한국폐기물학회(회장 이승무)가 지난 6월 25일 여의도 신태진빌딩에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 이전일자 : 1988년 6월 25일
- 이전주소 : 은평구 불광동 280-17 국립환경연구원 408호 한국폐기물학회
- 전화번호 : 352-5933



## 닭질병 방역세미나 개최

- 일시 : 1988년 7월 23일(土)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 수의과대학(수원)

※ 종계 후반기 산란율, 마렉병 대책, 사료위생